

※ 별첨 : 본원 직원인사규정 제21조(결격사유)

제2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학교법인 경희학원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및 기타 사업장에서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
9.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10. 본원에서 정규직원으로서 퇴직을 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(단, 정규직원으로 재채용되는 경우에 한함)